

소규모합병 공고

주식회사 네오위즈(이하 "당사") 2020년 9월 18일 주식회사 네오위즈에이블스튜디오 및 주식회사 네오위즈아이엔에스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는 바,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합병계약 승인을 할 예정이므로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다 음-

1. 합병 당사회사

가. 존속법인: 당사

나. 소멸법인:

1) 주식회사 네오위즈에이블스튜디오

(본점 소재지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4(삼평동, 네오위즈판교타워))

2) 주식회사 네오위즈아이엔에스

(본점 소재지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4(삼평동, 네오위즈판교타워))

2. 합병 방법: 당사가 주식회사 네오위즈에이블스튜디오와 주식회사 네오위즈아이엔에스를 흡수합병함.

3. 합병기일: 2020년 11월 30일

4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가. 행사절차: 2020년 9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'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'를 제출함.

나. 행사기간: 2020년 9월 29일 ~ 2020년 10월 13일
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
1) 2020년 10월 13일까지 별첨의 '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'를 거래 증권사 또는 아래 주소로 제출

2) 우편 송부처: [13487]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4(삼평동, 네오위즈판교타워),

주식회사 네오위즈 IR팀 주식담당자 앞(☎ 031-8023-6600)

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.
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.

2020년 9월 29일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4(삼평동, 네오위즈판교타워)

주식회사 네오위즈 대표이사 문 지 수

